

제8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36조(계약의 기간)

- ①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 ② 장기요양인정갱신 및 등급의 변경 등으로 인해 유효기간이나 수가 등이 변경될 경우 갱신 · 추가 ·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목적)

- ① 계약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 간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38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 외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명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선납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로 한다.
- ④ 선납 후 외박, 중도 퇴소 등의 사유로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 또 수급자 본인이 요청하는 계좌로 즉시 이를 환불 한다.
- ⑤ 시설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1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 문자, SNS 등을 이용해 통보한다.

- ⑥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각종 정보제공을 요청해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1.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 의무
6. 수급자가 의료시설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무
7. 수급자의 폭행으로 인해 다른 수급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의무

제40조(계약의 해제(해지))

- ① 시설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는(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2.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단,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